

일본, PL법 실시에 대응하여 “가전제품 PL센타”설치

일본 가전업계는 금년 7월 1일에 실시하는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가전제품협회내에 “가전제품 PL센타”를 설립하였다.

가전업계는 타업계에 앞서 PL에 관한 분쟁처리 기관을 설립해서 「가전제품의 사고에 관련한 분쟁해결의 일환으로 상대와의 교섭에 있어 공평성, 투명성을 기하고 재판진행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등 각종의 문제해결에 실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가전업계는 과거 약20년에 걸쳐 제조물책임문제를 중시하여 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과 만일의 경우 예상되는 피해구제에 적시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여왔다.

1992년에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방책으로 종래부터 개별기업에서 실시하던 소비자대응책을 강화하여 업계인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인 소비자 대응 창구로서 가전제품협회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였다.

더우기 작년 7월 1일에 제조물책임법이 공포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전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가전업계로서는 PL법제정에 수반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따른 업계의 자세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알선, 재정기능을 갖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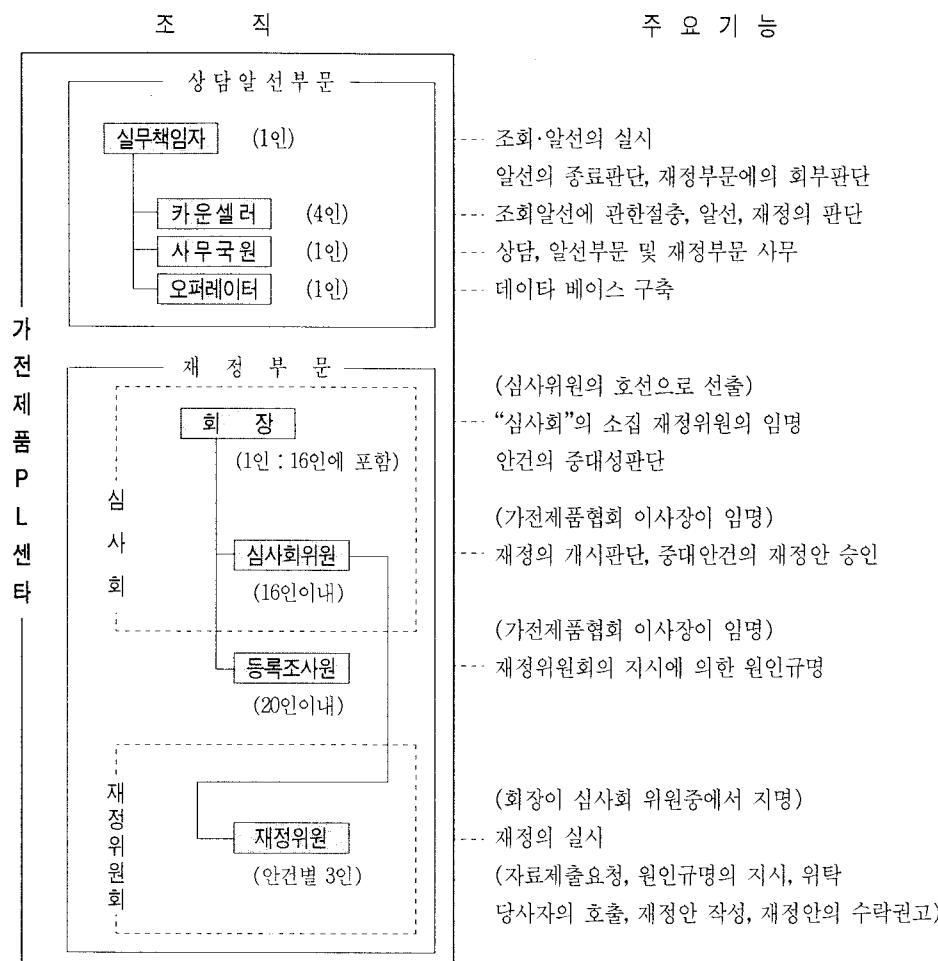
“가전제품 PL센타”는 가전제품협회내에 설치하여 중립, 공정한 제3자 기관으로의 위치로 동협회와는 회계 및 관리체계를 분리한 형태로 운영한다.

인원은 상담, 알선부분은 센터장, 카운셀러등 7인(상근), 재정부분은 변호사, 기술자, 소비자문제 전문가, 조사원 등 36명이내(비상근)로 구성되며 가전제품 전반을 대상으로하여 ①제품관련 사고에 관한 분쟁처리 ②제품의 안전성결합에 관한 조회, 상담, 애로처리등을 수행한다.

예산은 관련 공업회의 출자금, 일부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며 초년도의 운영예산은 7천만엔이며 상담, 알선은 무료, 재정료는 1건당 1만엔 정도이며 재정건수는 초년도에 4천건 전후로 예전한다.

가전제품 PL센타의 조직과 주요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가전제품 PL센타의 조직과 주요기능



1995. 2. 11자 일본전파신문